

의안번호	2211810
의 퇴 인	양문석의원
회 답 일	2025. 8. 28.
추계번호	25C4083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과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00만원(연평균 2,16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90	—	—	—	—	90	18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4조)	3.6	3.6	3.6	3.6	3.6	18	3.6
합계	93.6	93.6	93.6	93.6	93.6	108	2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광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3	안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통해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4	안 제8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정부는 광고주와 광고사업자 간, 광고사업자 상호간 또는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 간에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재량규정
5	안 제9조(국제협력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광고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표준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광고기술·광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2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산업의 실태 및 광고 효과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4조(미디어광고 균형발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함(제2항) 1. 광고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광고매체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4.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광고, 미디어, 행정, 경제, 경영, 법학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6. 그 밖에 광고, 광고매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10	안 제15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된 공익적 광고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광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안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3	안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 실시 중
4	안 제8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5	안 제9조(국제협력 촉진)	×	
6	안 제10조(표준화 지원)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7	안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	-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2조(실태조사)	×	- 실시 중
9	안 제14조(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	○	
10	안 제15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	- 실시 중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4억원) - 광고 창작경연 지원(4억원) - 1인광고 콘텐츠 창작자 양성(5.6억원) - 디지털광고 전문인력 양성(3.5억원)
안 제8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16.4억원) - 방송·방송광고 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지원(5.7억원)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2.2억원) - 방송·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 등 허가 심사지원(1.9억원)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업임
안 제9조(국제협력 촉진)	- 부산 국제마케팅광고제 지원(6억원)
안 제12조(실태조사)	- 광고산업조사(2.4억원) - 광고산업 실태조사(1.6억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15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 방송광고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19.3억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18.8억원)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22.8억원)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업무(안 제6조), 표준화 지원(안 제10조),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3조에 따른 광고산업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4조에 따른 광고진흥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광고진흥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 따라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 재정 소요 발생 예상
- 광고진흥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3]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90	-	-	-	-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를 참고하여 연 3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
-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²⁾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0만원으로 가정
- $6명 \times 3회 \times 200,000원 = 3,600,000원$

[표 4]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4조)	360	360	360	360	360	1,8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는 2020년 연 3회, 2021년 연 2회, 2022년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2)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